

〈붙임〉 보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재 공고문

안전은 권리입니다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 수행기관 재공모

보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2023. 2. 28. [화]

보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재 공 고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 사업규모 : 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장에 950회(약238개소) 기술지원 실시
- 예산규모 : 83.6백만원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3. 12. 13.(수)
- 사업분야 : 보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 사업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비 지급

사업참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2. 28.(화) 09:00 ~ 3. 7.(화) 18:00
신청방법	• 공단 본부·우리지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신청자격	• 수행요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단 위탁 업무를 재위탁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에 한함 - 아래 기관은 참여 불가 ① '22년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중 계약 해지·해제 또는 업무수행능력평가 부적격 등급(N등급) 기관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제출서류	• 공모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위탁) 수행 사업계획서 10부 등
선정방법	• 사업계획, 업무수행능력·기관평가결과, 인력운영, 전문성, 사업충실성, 창의적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문의처 : 경북동부지사 건설보건부 정희수 대리(☎054-271-2023)

2023년 2월 28일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 수행기관 공모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고용노동부 발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영세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장의 보건관리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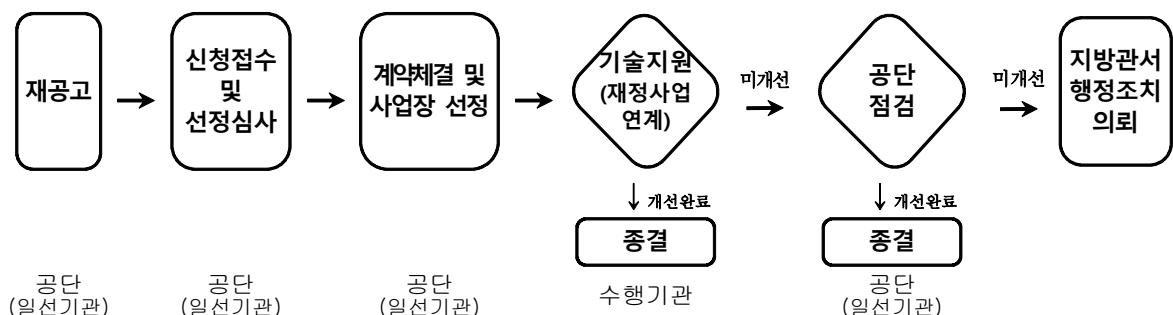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13.(수)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중 사업수행비 지급평가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실시

- (사업규모) 950회(약 238개소) ※ (수수료 규모) 83.6백만원

- (사업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120억원 건설업 포함)

- (추진절차)



- (과업내용) 수행기관은 주요과업에서 정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함

* 세부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함

□ (주요과업)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 중점 기술지원 내용

①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 ②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

- ▶ (사업장 현황 조사)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MSDS비치,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국소배기장치 현황 등 조사
- ▶ (컨설팅) 위험성평가 기반의 맞춤형(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건강관리) 컨설팅 실시

(1회차)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컨설팅

- (사업장 현황 파악) 사업장 현황 조사표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현황 데이터 수집
 - (컨설팅) 위험성평가 기반의 맞춤형(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건강관리) 컨설팅 실시
 -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국소배기장치 관리, 폭염관리 등
 - (작업관리) 질식재해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등
 - (직업건강관리)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감정노동 관리 등
- ※ 개선을 위한 보조금·용자금 필요 사업장에 재정사업 연계(「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절차 준수)

(2회차) 위험성평가표 작성 지원 및 기술자료 보급

- (위험성평가표 작성 지원) 위험성평가표 작성 지원, 사업장 담당자 서명이 된 평가표를 K2B에 업로드

(3회차) 유해·위험요인 추가 발굴 지원 및 컨설팅 실시

(4회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교육 안내

- (관리체제 및 교육 안내)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확인(미선임 시 선임절차 지원),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현황 확인 및 지원,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안내*

* 산안법 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의무교육 안내(교육대상, 교육시간, 강사자격, 교육자료 등 제공)

- (②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 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양호, 보통, 미흡, 불량)

- * 기술지원 시 매회 평가를 실시하고, 수행기관 사업 책임자 등이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전산시스템(K2B)에 입력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관리 내용>

등급	평가점수	관리 내용
양호	80점이상~ 100점	1회차 또는 2회차 평가결과 양호 시 기술지원 종결
보통	60점이상~ 80점미만	2회차 평가결과 보통 이상 시 기술지원 종결 ※ 5~49인 사업장의 경우 3회차 보통 시 기술지원 종결
미흡	40점이상~ 60점미만	2회차 평가결과 미흡 이하 시 3회차 기술지원 실시 ※ 5~49인 사업장의 경우 3회차 미흡 시 4회차 기술지원 실시 ※ 전년도와 당해연도 최종 평가결과 미흡 시 조치의뢰(수행기관→공단)
불량	40점미만	최종 평가결과 불량 시 조치의뢰(수행기관→공단)

- **(재정사업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 사업장을 공단 재정사업과 연계추진(계약사업장 수의 3% 이상)
- **(불량사업장 관리-조치의뢰)** 기술지원 결과 미개선 사업장 등 불량사업장 공단 점검사업과 연계추진
※ [첨부6]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방법 참조
-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사업주 자율 재해 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기술지원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산재예방요율제 홍보물 배포(필요 시 공단 제작물 일부 활용 가능)
- **(자료보급 등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및 건강장해예방 등의 자료 제작·보급(수행기관 자체 제작보급 등)
- **(창의적 자체 사업-자율과업)**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 창의적 자체(자율) 과업은 수행기관 선정시 평가기준 “자체재해 예방활동”에 반영·평가되며, 이행여부 등은 업무수행능력평가에 반영

<창의적 자체 과업 예시>

- ☞ 화학물질 중독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 화학물질 중독 위험성 교육 및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및 실시
-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 보급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고표지 부착 및 관련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방법

- (지원한계) 1일 최대 1회차 3개소 이내, 2회차 이상 5개소 이내
 - 수행요원이 같은 날에 일반대행*과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위탁)을 병행할 경우 일반대행 1개소를 기술지원사업(위탁) 1개소로 간주
 - * 일반대행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것을 뜻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동일함
 - 법정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 토요일은 기술지원 불가
- (사업장당 지원횟수)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규모	5인미만	5~49인
지원횟수	평균 2회(최대 3회)	평균 3회(최대 4회)

- (기술지원 주기) 동일 사업장에 대한 방문주기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수행요원 1인당 1일 지원한계 내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 탄력 운영

□ 사업예산 및 수수료

- (사업예산) 83.6백만원
- (수수료) 88,000원/회
- (지급방법) 기술지원 계약횟수 및 회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산정, 선금 및 정산금으로 지급

□ 업무수행능력평가

- (평가시기) 2023년 11월 예정
- (평가방법) 공단이 수행기관의 기술지원 인프라, 사업추진과정 및 직업건강활동 향상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표에 따라 계량평가(1,000점 만점)
- (평가기준) “운영체계 및 관리”, “업무성과 및 환류”로 구분하여 평가

※ '23년 업무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등은 계약 이후 확정 예정

- **(평가결과 반영)** 우수기관은 차기연도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를 보장하고, 불량기관은 사업 참여 배제
- 우수기관*은 전년도 수행물량 우선보장(동일 분야·지역으로 한정)
 - * 우수기관은 권역별(6개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 업무수행능력평가 900점 이상으로 상위 15% 내외 기관이며, 세부적인 권역별 기관수는 업무수행능력평가 최종 심의회의에서 결정
 - ※ 우수기관 보장물량은 신청지역(일선기관)의 배정물량의 최대 50% 이내로 함
- 차기연도 수행기관 선정 심사 시 전년도 평가지역에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평가 등급별 점수 부여(동일분야로 한정)
- '23년도 분야별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등급(N등급) 기관은 차기연도 기술지원사업(위탁) 전 분야 참여 제한조치
- D등급 이하를 받은 수행기관 등에 대해 차기연도 사업 참여 시 공단에서 업무수행능력향상 업무지도를 실시 할 수 있음

등급	S	A	B	C	D
구분	900점 이상 & 권역별 상위 15% 내외	80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미만	600점 이상 700점 미만	600점 미만

※ 부적격 등급(N등급)은 최종 심의회의에서 결정

□ 참여신청 방법

- 참여신청은 사업수행 희망지역(공단 일선기관 단위)을 구분하여 신청
- 단독참여 원칙(권소사업 불가)

□ 사업참여 최소 및 최대물량 기준

- 수행기관의 신청물량은 공단 일선기관 배정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하나, 최소 600회 이상으로 신청
 - ※ 단, 일선기관 배정물량이 1,20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배정물량 전체 신청 가능하며, '22년 기술지원사업(위탁) 업무수행능력평가 S등급 기관은 '23년 수행물량 보장
 - ↳ 보장물량은 '22년과 동일지역(일선기관) 및 동일분야 신청 시 해당되며, 신청 기관(일선기관) 배정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사업(위탁) 수행요원 보유인력 기준의 최대 2배 이내로 희망물량 신청 가능
 - ※ 사업장 기술지원 한계를 검토하여 전담 수행요원별 신청물량 산출
- (1일 지원한계) 1회차 3개소 이내, 2회차 이상 5개소 이내
 - ※ 일반대행과 겸직하는 수행요원의 신청물량은 월 기준 총 60회 지원을 기준으로 잔여 여력을 다음의 비율로 산출하여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 물량 신청
 - ↳ 일반대행 겸직 수행요원 신청 가능 물량 = $(60\text{회} - \text{일반대행 지원횟수}/\text{월}) \times 10$
 - ↳ (예시) 수행요원A 일반대행 20회/월, 기술지원사업(위탁) 신청가능 물량 = $(60-20) \times 10 = 400(\text{회}/\text{년})$

□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으로 다음의 수행요원 자격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 아래 기관은 참여 불가
 - ① '22년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중 계약 해지·해제 또는 업무수행능력평가 부적격 등급(N등급) 기관
 -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 수행요원 자격

○ 아래의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수행요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29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 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 ※ 임상 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건분야 대행업무 1년 이상 수행자
- ※ 졸업예정자는 '23.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한정

※ 기술지원사업(위탁)에 참여하는 수행요원은 당해연도 사전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수행요원 교육 계획은 공단에서 별도(시간, 방법 등) 수립·시행·안내 예정

□ 계약해지 또는 해제 조건

- 공단은 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납부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처리 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공단에서 1차 경고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음(단, 사회적 물의 여부는 심의회의에서 결정)
 - 사업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한 판단은 ①사업착수 지연 ②분기별 누적 실적 또는 단위 분기별 실적이 동일 사업분야 지원횟수 평균진도율 기준 70% 미만인 경우 등
 - 11월 말까지 총 계약물량의 90%이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계약 및 과업조건에 정하는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수행기관은 '24년도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배제 등 패널티 부과

- 허위 또는 부정당 행위로 공단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음
-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이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단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24년도 기술지원사업(위탁) 해당분야 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

□ 기타

- 수행인력, 신청물량 등의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계획은 계약일 이후부터 '23. 12. 8.(금)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
-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요원 보유인력(참여신청서 제출기준) 대비 최대 2배 이내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 이후 채용예정인력의 채용확인 서류는 '23. 3. 31.(금) 18:00(도착기준) 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할 수 있음

※ 채용확인 서류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 수행기관 선정 후 선정평가에 포함되었던 수행요원이 퇴사하는 등 수행이 불가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일 경력* 이상의 수행요원을 채용하여야 함

* 수행요원 경력의 구분

1. 기술지원사업(위탁), 일반대행, 타 사업장 지도업무 경력(이하 "해당경력") 60개월 이상
2. 해당경력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3. 해당경력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 해당경력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5. 해당경력 24개월 미만

☐ 신청기간

- 2023. 2. 28.(화) 09:00 ~ 3. 7.(화) 18:0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23. 3. 7.(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 접수장소 및 연락처

접수장소	담당부서	주소
경북동부지사	건설보건부	(37822)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2층 건설보건부

- * 접수된 서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 다만, 접수기간 마지막 날에 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는 3. 10.(금)까지 제출 가능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공모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서 사본 1부.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 사업계획서는 20매 이내로 사업계획서 착안사항(첨부2)을 참조하여 A4, 글자 크기 12~13 point로 작성(자율양식)
 - * 사업계획서 제출분 10부 중 9부는 참여신청 기관명이 확인되지 않도록 해당부분 처리 후 제출
- 인력운영계획서 1부.
- 수행요원별 참여 경력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수행요원별로 「기술지원사업(위탁), 일반대행 및 타사업장 지도 경력서」
 - ↳ (자격 증빙) 수행요원 자격증, 학력·경력증명서로 증빙
 - ↳ (채용 증빙) 수행요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자명부

IV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선정
- 기타사항은 접수장소에서 안내

※ 선정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진행 예정

↳ 발표자료는 선정심사일 이전까지 접수처에 제출

□ 선정기준

-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다음 항목(선정기준 예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① 평가결과	○ (사업평가) '22년도 기술지원사업(위탁)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22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45
② 전문성 및 접근성	○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성 ○ (접근성) 사업수행의 지역적 접근 용이성	20
③ 사업 충실성	○ (주요과업)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 지원 ○ (성과관리) 위험성평가 기반의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감축목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감소 ○ (역량강화) 인력 배치·운영 및 수행요원 역량 향상계획	30
④ 자체 재해 예방활동	○ (창의적 과제) 자율·자체 재해예방활동 계획 수립	5
감점	○ (민원야기) '22년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귀책사유 민원야기 여부	(-5)
합 계		100

< 선정기준 관련 착안사항>

-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
 - ※ 위원회 구성·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운영규칙」을 따름
- 수행요원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경력 우대 / 고용안정성 높은 기관 우대
- 수행기관 선정 후 선정평가에 포함되었던 수행요원이 퇴사하는 등 수행이 불가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일 경력 이상의 수행요원을 채용하여야 함
- 신청물량이 일선기관 배정물량 보다 미달하더라도 선정심사 결과, 수행기관의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하지 않음
- 수행예정물량이 소속기관 신청물량의 10% 또는 150회(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선정기준 “②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성” 평가에서 제외

□ **선정심사** : 2023. 3. 8.(수) ~ 3. 10.(금)까지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심사 후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내 경북동부지사 알림마당에 결과발표 및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

<첨부> 1. 참여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1부.

3. 인력운영계획서(예시) 1부.

4. 기술지원사업(위탁), 일반대행 및 타사업장 지도 경력서(양식) 1부.

5.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개요 1부.

6.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방법 1부.

7. 공단 일선기관별 사업물량 1부.

8.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1부.

[첨부1] 참여 신청서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 신청서

참여분야	보건 분야	지정지역 및 한계	- 행정구역() - () 지방고용노동청 - () 개소 () 명
신청지역 (수행희망)	경북동부지사	희망물량	()회
업무수행 능력평가	■ '22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내역 -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등급() 계약물량()회		
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지정유형()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 '22년도(적년도 평가의 경우 '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내역 ☐ S ☐ A ☐ B ☐ C ☐ D ☐ 등급없음	
참여기관	기관 형태	기관명 및 주소 [본사,지사 모두 작성]	수행요원 현황
	☐ 본사 ☐ 지사	【본사명】 대표자 : 【본사주소】 FAX : 전화번호 :	☐ 기술사 : 전담 [명], 겸직 [명] ☐ 지도사 : 전담 [명], 겸직 [명]
		【지사명】 대표자 : 【지사주소】 FAX : 전화번호 :	☐ 기사 : 전담 [명], 겸직 [명] ☐ 산업기사 : 전담 [명], 겸직 [명] ☐ 기타 : 전담 [명], 겸직 [명]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 서류 붙임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기관 지정서(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0부(기관명포함 1부, 기관명제외 9부). ※첨부2.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참고 4. (첨부3) 인력운영계획서 1부. 5. (첨부4) 수행요원별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일반대행 및 타사업장 지도 경력서 각 1부. 6. 수행요원별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전체.			

※ 지정지역 및 한계는 보건관리전문기관만 작성

※ 신청지역은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일선기관명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으로 구분

※ 지역본부, 지사, 지회, 사무소, 출장소는 “지사” 항목에 작성

[첨부2]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계획서 착안사항

아래 내용은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평가항목 “사업충실성 및 자체재해 예방활동”)하고, 선정된 기관의 경우 본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

※ 기술지원 허위 또는 미추진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으며, “사업충실성” 및 “자체재해 예방활동” 이행여부 등은 업무수행능력평가에 반영 예정

※ 통계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활용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가승인통계 > 산업재해통계 > 산업재해현황

1. 사업(위탁) 참여기관 현황

- 참여 신청기관 개요 및 현황(수행가능 인력현황 포함)
- 사업(위탁) 참여 신청지역 특성 및 추진방향 설정 등
 - ※ ① 신청지역의 산업 및 재해특성분석, ② 사업(위탁)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 ③지역적 접근 용이성
- 전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2. 사업 충실성(사업추진 전략)

- (주요과업)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지원
 -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방안
 -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방안
 - ▶ 재해예방활동 인정(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유도·달성 계획 등
- (감축목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감소
 -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감소 성과 목표 및 향상계획(지역 재해특성분석 등)
 - ▶ 사업초기부터 효율적 시스템 안내, 홍보 등 방안(자료제작 등)
 - ▶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자체 모니터링 계획, 사업장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
 - ▶ 수행기관 실적 및 성과관리 방안(K2B, 업무수행능력평가 등)
- 인력 배치·운영 및 수행요원 역량 향상계획
 - ▶ 수행 희망지역 및 지원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인력투입, 사업장배분 등 역할분담 계획 및 인력 추가 확보계획의 적정성
 - ▶ 수행요원 역량관리 계획(내·외부 교육계획 등)

3. 자체재해 예방활동

- (창의적 과제) 자율·자체 재해예방활동 계획 수립 → 수행기관 자체 창의적 과제
 - ▶ 수행기관 및 지원예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재해예방활동 계획 수립여부 및 충실도
 - ※ 수행 희망지역 및 기관특성 반영, 적극성, 충실도, 이행 난이도, 실행가능성 등 포함
 - ▶ 사업성과 제고 및 효율화 위한 성과관리
 - ※ 특히, 질식재해예방, 특수건강검진 추진, 작업환경측정 이행 제고 방안 중심

<창의적 자체 과업 예시>

- ☞ 화학물질 중독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 화학물질 중독 위험성 교육 및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및 실시
-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표지 보급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고표지 부착 및 관련 기술지원 실시

4. 일반대행 및 사업(위탁)추진현황(최근3년)

- 최근 3년간('20 ~ '22년) 일반대행 및 사업(위탁) 추진실적 및 현황
- 일반대행 : 연도별 사업장수, 일반대행요원 등
- 사업(위탁) 추진현황 : 안전, 화학 등 분야별로 계약물량, 수행요원(국가기술자격별, 일반대행 및 사업(위탁) 참여경력 인원 등), 평가등급 등을 간략히 기재

[첨부3] 인력운영계획서

2023년도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인력운영계획서(예시)

참여지역 ^①	경북동부지사		참여기관명	산업보건예방지도원				
참여분야	보건		희망(신청)물량	950회				
전체인원 ^②	10명	위탁인원 ^③	3명	전담/겸직 ^④	전담 { 2 } 겸직 { 1 }			
성명	고용 형태	참여	자격기준		위탁 사업 경력 (개월) ^⑥	일반 대행 경력 (개월) ^⑦	사업장 지도 경력 (개월) ^⑧	수행 물량 (회)
			자격증	경력 ^⑤				
홍길동	정규직	전담	산업위생기사	5년	6	6	-	470회
○○○	비정규직	겸직	간호사	3년	-	-	12	240회
채용예정								240회
계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참여지역 : 공단 일선기관명 기입
- ② 전체인원 : 수행기관 소속 전체 근로자수(사업주 제외)
- ③ 위탁인원 :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사업(위탁)에 참여하는 수행요원수
↳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
- ④ 전담/겸직 : (전담) 민간위탁사업 전담인력 수/(겸직)일반대행 등의 업무와 겸직인력 수
↳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
↳ 복수 일선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겸직 표시
- ⑤ 경력 :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분야 경력
- ⑥ 위탁사업경력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 경력('22년 12월 31일 기준)
- ⑦ 일반대행경력 : 보건관리대행 경력('22년 12월 31일 기준)
- ⑧ 사업장지도경력 : 타사업장 지도경력(고용노동부 감독업무, 공단 기술지도 업무 등)
↳ 사업장 자체 보건관리업무 제외

[첨부4] 기술지원사업(위탁), 일반대행 및 타사업장 지도 경력서

기술지원사업(위탁), 일반대행 및 타사업장 지도 경력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기 간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개월)				
참여분야	☐ 안전분야 ☐ 화학분야 ☐ 보건분야 ☐ 건설분야 ☐ 서비스분야					
희망물량	참여기관 신청물량	()회		수행요원별 지원물량	()회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 . .					
위탁사업 및 일반대행 참여경력	기관명	근무기간		전담/겸직	참여분야	참여개월 (예시 참조)
	00재해예방	'11. 1. 1. ~ '14. 12. 30.(48개월)		전담	건설	48
	00재해예방	'09. 1. 1. ~ '10. 12. 30.(24개월)		겸직	안전	6
						총 54개월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 경력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첨부서류 : 1.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및 일반대행 참여 경력증명서
 2.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학력·경력증명서 등)
 3. 근로계약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자명부

2023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00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 (유의사항) 선정심사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력기간

- ▶ 참여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수행요원 참여개월 "0" 처리
- ▶ 경력증명서 상에 위탁사업, 일반대행 및 타사업장 지도 수행여부가 불명확한 경력기간
- ▶ 사업장 자체 보건관리업무
- ▶ '23년 수행기관 신청물량 대비 수행예정물량이 10% 미만 또는 150회 미만인 수행요원의 경력기간

※ 안전·보건관리/건설재해예방전문지원기관 경력, 겸직, 타분야 위탁참여 경력, 타사업장 지도경력은 각각 참여개월×0.5로 계산

*예시) △△△ 이 전담(보건분야) 48개월, 겸직(안전분야) 24개월인 경우 '23년 보건분야 참여 시
 ⇒ 48개월(전담) + 24개월×0.5(겸직)×0.5(타분야) = 54개월

[첨부5]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개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보건분야)

□ 평가 개요

-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하고 차등관리하기 위함
- 기술지원 시 매회 평가를 실시하고 수행기관 사업 책임자 등이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조정(수행요원별 평가 성향, 평가와 보고서의 일치성 등)하고, 평가결과는 K2B 입력(평가결과는 사업장 미제공)
 - ※ 수행기관의 관리자는 수행요원별 등급평가 분포(성향)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서 수행기관·수행요원별 등급평가 분포(성향)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에 협조

등급	평가점수	관리 내용
양호	80점이상~100점	1회차 또는 2회차 평가결과 양호 시 기술지원 종결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2회차 평가결과 보통 이상 시 기술지원 종결 ※ 5~49인 사업장의 경우 3회차 보통 시 기술지원 종결
미흡	40점이상~60점미만	2회차 평가결과 미흡 이하 시 3회차 기술지원 실시 ※ 5~49인 사업장의 경우 3회차 미흡 시 4회차 기술지원 실시 ※ 전년도와 당해연도 최종 평가가 미흡 시 조치의뢰(수행기관→공단)
불량	40점미만	최종 평가결과 불량 시 조치의뢰(수행기관→공단)

□ 평가 활용

- 수행기관에서는 불량사업장을 공단으로 조치 요청
 - (불량사업장) “수준 평가 최종 결과 불량(40점 미만)인 사업장” 또는 “’22년 보건분야 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실태평가 미흡 & ’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미흡” 인 사업장

[첨부6]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방법

미개선 사업장 등의 조치

□ 조치 대상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결과 ① “불량” 사업장 ② '22년 “미흡” 사업장이 2년간 연속 지원 후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 (단, 2차 이상 기술지원 후에도 개선의지가 없는 사업장)

□ 조치 절차

- ① (수행기관) 거부 사업장을 포함한 불량 사업장(미개선 사업장, 급박한 위험 사업장)을 공단 일선기관에 조치의뢰 후 종결 처리
- ② (공단)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1차 시정안내 공문 시행 또는 방문지원(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에 따라 30일 이내의 시정기간 부여, 방문지원을 통해 개선 촉구·개선 대책 수립 등을 지원[방문 지원 후 지원보고서 작성·송부])

□ 거부 사업장에 대한 조치(특례)

- 수행기관은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 취지를 설명하여 설득하되, 지속적 거부의 경우 공단에 통보
 - ※ ① 사업장 방문, 출입·자료열람·현장확인 등 거부 → ② 기술지원 사업취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거부의사 확인(대면 또는 유선) → ③ 기술지원 거부 시 고용노동부 통보 등 후속절차 설명, 거부의사 재차 확인 → ④ 기술지원 중단, 일선기관에 거부 사업장 통보 → ⑤ 대체사업장 배정 신청

[첨부7] 대구권역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대구권역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역본부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구미·영주·안동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경북동부지사	포 향 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포항지청